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11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한 사업 외에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신활력플러스 또는 농촌협약 사업까지 확대하고 그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조건인 위원회를 추가하는 등 거창군 농촌지역개발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안 제명, 제2조제3호)

1)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사업 신설

나. 마을만들기 관련 비상설 위원회 추가(안 제10조)

1) 현행) 맞춤형 마을만들기 위원회

2) 신설)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다. 비상설위원회에 따라 위원회 정비(안 제11조·제14조)

1) 위원회 임기 삭제

2) 정기회·임시회 구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9. 23.~10. 1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업”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마을만들기”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주민이 제안한 맞춤형 마을만들기
 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맞춤형 마을만들기,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위원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관 사업담당에서 구성하고,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1.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위원회
 2. 거창군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3. 거창군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 추진
 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항·제4항(기존 제5항) 중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4항(기존 제5항) 중 “담당과장이”를 “담당주사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 중 “위원회”를 “각 위원회”로 각각 한다.

제14조제3항 중 “위원회의 간사”를 “군수”로 “비치하여야”를 “갖춰둬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맞춤형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에 의하여 그들의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제안된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추진주체”란 개인, 단체, 단체 간의 네트워크, 마을 또는 공동체 조직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을 총칭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마을만들기”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주민이 제안한 맞춤형 마을만들기 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4. “추진주체”란 개인, 단체, 단체 간의 네트워크, 마을 또는 공동체 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을 총칭한다.
제10조(맞춤형마을만들기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맞춤형마을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맞춤형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맞춤형 마을만들기,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각 위원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관 사업담당에서 구성하고,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1.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위원회 2. 거창군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3. 거창군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의 대상과 범위 3. 신규사업 공모 및 사업 추진 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삭 제> ④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각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각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④ (생 략)	각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3.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계부서의 협조)**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세칙)** 그 밖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